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도 안내 ▣

※ **자진 출국 후 6개월 후 또는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

구 분	6개월 후 재입국	3개월 후 재입국
대상 사업장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	제조업(내국인 근무자 수 30인 이하 사업장, *뿌리산업은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대상 근로자	재고용된 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내 자진 귀국한자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u>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u> 성실히 근무하다 자진귀국한 자 (12. 7.2이후부터)
자격	18세 이상 39세 이하 외국인 근로자	나이제한 없음
한국어시험	특별 한국어시험 * 실 시 : 1년에 4회 * 시행국가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추후 시행국 확대 예정)	면 제
재입국 시기	출국 하고 6개월 후 재입국	출국 하고 3개월 후 재입국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종전 사업장 근무 가능	반드시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해야함
사업주의 사전신청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구직자는 본인이 직접 송출기관에 구직신청(건강검진합격후)을 해야함.	취업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
시행시기	현재 시행중	* 2012년 7월 2일 부터
취업교육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단, 재입국 후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은 실시)
출국기한	취업활동기간 내 출국	체류기간 내 출국
귀국신고	-	출국 후 7일 이내 해당국가 송출기관에 반드시 귀국신고 (재입국 서류 및 경비납부)
필수사항	반드시 출국 할 때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함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